

인천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가단2191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규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관하여 2021. 11. 2. 체결된 매수자금 증여계약을 23,662,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62,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662,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304057 사건의 2023. 1. 11.자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23,662,428원(2024. 2. 28. 기준)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는 무자력 상태에서 2021. 11. 2. 자녀인 피고에게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금전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 범위 내인 23,662,428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3,662,4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F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수자금을 교부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수자금 상당액 중 원고의 채권 범위 내인 23,662,42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든가,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매수자금을 교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